

공시사항

기준일 : 2022-09-30

■ 누적 연계대출 금액

(단위 : 원)

구분	2017 년	2018 년	2019 년	2020 년	2021 년	2022 년
부동산PF		-	-	-	1,040,000,000	1,540,000,000
부동산담보		1,511,000,000	4,970,000,000	12,697,500,000	18,753,500,000	36,067,500,000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	-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	-	-	-	-	-
개인신용		-	-	197,500,000	197,500,000	257,500,000
법인신용		-	-	-	-	-
합계	-	1,511,000,000	4,970,000,000	12,895,000,000	19,991,000,000	37,865,000,000

■ 연계대출 잔액

(단위 : 원)

구분	2017 년	2018 년	2019 년	2020 년	2021 년	2022 년
부동산PF		-	-	-	1,040,000,000	-
부동산담보		1,260,000,000	2,770,130,000	7,077,200,000	3,857,500,000	14,369,300,032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	-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	-	-	-	-	-
개인신용		-	-	140,500,000	10,500,000	60,000,000
법인신용		-	-	-	-	-
합계	-	1,260,000,000	2,770,130,000	7,217,700,000	4,908,000,000	14,429,300,032

■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2017 년	2018 년	2019 년	2020 년	2021 년	2022 년
부동산PF	총 연계대출잔액	-	-	-	1,040,000,000	-
	총 연체채권잔액	-	-	-	-	-
	연체율	0.00%	0.00%	0.00%	0.00%	0.00%
부동산담보	총 연계대출잔액	1,260,000,000	2,770,130,000	7,077,200,000	3,857,500,000	14,369,300,032
	총 연체채권잔액	-	554,026	5,774,160	-	-
	연체율	0.00%	0.02%	0.08%	0.00%	0.00%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총 연계대출잔액	-	-	-	-	-
	총 연체채권잔액	-	-	-	-	-
	연체율	0.00%	0.00%	0.00%	0.00%	0.00%
어음·매출채권담보	총 연계대출잔액	-	-	-	-	-
	총 연체채권잔액	-	-	-	-	-
	연체율	0.00%	0.00%	0.00%	0.00%	0.00%
개인신용	총 연계대출잔액	-	-	140,500,000	10,500,000	60,000,000
	총 연체채권잔액	-	-	-	-	-
	연체율	0.00%	0.00%	0.00%	0.00%	0.00%
법인신용	총 연계대출잔액	-	-	-	-	-
	총 연체채권잔액	-	-	-	-	-
	연체율	0.00%	0.00%	0.00%	0.00%	0.00%
합계	총 연계대출잔액	-	1,260,000,000	2,770,130,000	7,217,700,000	4,908,000,000
	총 연체채권잔액	-	-	554,026	5,774,160	-
	연체율	0.00%	0.00%	0.02%	0.08%	0.00%

■ 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

구분	가중평균 금리	현행금리		
		최고금리	최저금리	연체금리
부동산PF				
부동산담보	13.38%	15.00%	12.00%	+ 3%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			
어음·매출채권담보				
개인신용	14.00%	14.00%	14.00%	+ 3%
법인신용				
합계				

■ 회사의 연계대출 채권현황 및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누적 연계대출금액	연계대출 잔액	평균금리	연체채권잔액	연체율
부동산PF	1,540,000,000	-		-	
부동산담보	36,067,500,000	14,369,300,032	13.38%	-	0.00%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-	-		-	
어음·매출채권담보	-	-		-	
개인신용	257,500,000	60,000,000	14.00%	-	0.00%
법인신용	-	-		-	
합계	37,865,000,000	14,429,300,032	13.39%	-	0.00%

※ *평균금리'는 (대출 이자/대출채권 평균) * 100 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.

■ 회사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관한 사항

1)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상품 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누적연계투자금액(A)	연계투자잔액(B)	누적 자기계산 연계투자 금액	자기계산 연계투자 잔액	자기자본 대비 자기계산 연계 투자금액 비율	평균금리	연체율
부동산PF	-	-	-	-	-	-	-
부동산담보	-	-	-	-	-	-	-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-	-	-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-	-	-	-	-	-	-
개인신용	-	-	-	-	-	-	-
법인신용	-	-	-	-	-	-	-
합계	-	-	-	-	-	0.00%	-

2) 그 밖에 연계투자 상품 현황

2) -1 등록이후

(단위 : 원)

구분	누적 연계투자금액(C)	연계투자잔액(D)	평균금리	연체율
부동산PF	1,040,000,000	-	-	-
부동산담보	18,516,000,000	14,369,300,032	13.38%	0.00%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-	-	-	-
개인신용	60,000,000	60,000,000	14.00%	0.00%
법인신용	-	-	-	-
합계	19,616,000,000	14,429,300,032	13.39%	0.00%

2) -1 등록이전

(단위 : 원)

구분	누적 연계투자금액(C)	연계투자잔액(D)	평균금리	연체율
부동산PF	500,000,000	-	-	-
부동산담보	17,551,500,000	-	-	-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-	-	-	-
개인신용	197,500,000	-	-	-
법인신용	-	-	-	-
합계	18,249,000,000	-	-	-

※ "평균금리"는 (대출 이자/대출채권 평균) * 100 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.

■ 부실채권을 매각한 사항 (2021.8.26 온투업 등록 후)

구분	매각 부실채권		매각대금*	매각처
	차입자 수	금액*		
부동산PF	1	500,000,000	500,000,000	OOO대부 유휴회사
부동산담보	-	-	-	-
기타담보(어음·매출채권담보제외)	-	-	-	-
어음·매출채권담보	-	-	-	-
개인신용	-	-	-	-
법인신용	-	-	-	-
합계	1	500,000,000	500,000,000	-

※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이전 (2021년 8월 26일 기준)

구분	매각 일	대출 잔액*	매각대금*	매각처
부동산담보	2019-12-30	67,000,000	67,000,000	OO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
부동산담보	2020-05-28	140,000,000	140,000,000	OO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
부동산담보	2021-06-07	23,773,232	23,773,232	OO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
부동산담보	2021-07-30	600,000,000	600,000,000	OO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
합계		830,773,232	830,773,232	

*대출 원금 기준이며, 발생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

■ 플랫폼이용료

이용자	종류	내용
투자자	플랫폼이용료	·상환 원리금 투자자 정산 시 이용료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. ·투자잔액의 연 2.0% 이내에서 개별 상품별로 공시합니다.
	출금수수료	·출금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대출자	플랫폼이용료	·대출 심사의 결과에 따라 개별로 이용료율이 정해집니다. ·이용료 지급방식은 아래 4가지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. ① 대출 실행 전 대출자가 자체자금으로 납부 ② 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서 공제 ③ 매월 이자납부 시 이자와 함께 분할하여 납부 ④ 대출 만기일에 상환 시 원금과 함께 납부 ·이용료율은 연 7.0% 이내에서 개별 산정이 됩니다.
	중도상환수수료	·대출 건 별로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·최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연 3.0% 이내입니다.

※ 대출이율과 플랫폼이용료의 합계금액은 법정최고이율인 연 20.0% 이내로 결정됩니다.
 ※ 대출자의 경우 플랫폼이용료 외 담보권 설정비용, 신용조회비용, 그 밖에 약정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(온투법 제11조, 온투법 시행령 제10조)